

#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강석주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859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5월 30일

발 의 자: 강석주, 경기문, 고광민,  
구미경, 김규남, 김동욱,  
김영철, 김원태, 김재진,  
김지향, 김태수, 김형재,  
김혜영, 남궁역, 남창진,  
박 석, 박성연, 박영한,  
박춘선, 송경택, 신복자,  
옥재은, 윤종복, 이병운,  
이상욱, 이종환, 최민규,  
최호정, 홍국표, 황철규  
의원(30명)

## 1. 제안이유

- 우리나라 '22년 합계출산율은 0.78명으로 OECD 가입국 중 최하위  
특히, 서울 합계출산율은 2022년 기준 0.59명으로 전국 최저 수준으  
로 저출생 문제가 심각함.
-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공의 영역에서 보다  
다자녀 가족을 우대함으로써 다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에 대한 적극적  
인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.
- 이에 시립체육시설의 다자녀 가족에 대한 입장료 면제 및 사용료 감  
면 대상 인원 제한(4명)을 없애 다자녀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 
극복을 위한 대안을 공공영역에서부터 실시하여 이러한 분위기를 사  
회 전반으로 확산하여 조성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다둥이 행복카드에 등재된 가족의 시립  
체육시설의 입장료 면제 사항을 규정함. (안 제9조제3항제4호 신설)

나. 시립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대상을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다둥이 행복카드에 등재된 가족으로 규정함. (안 제10조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, 지방자치법 ,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

##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감액”을 “감면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후단 중 “사람,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(본인을 포함하여 4명까지)”를 “사람”으로 하며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#### 4.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다둥이 행복카드에 등재된 가족: 면제

제10조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호가목 중 “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(본인을 포함하여 4명까지)”를 각각 “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다둥이 행복카드에 등재된 가족”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9조(입장료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입장료를 <u>감액</u>할 수 있다.</p> <p>1. 18세 이하인 자, 65세 이상인 자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·18민주유공자,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<u>사람,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(본인을 포함하여 4명까지)</u>,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: 100분의 50 감액</p> <p>2.·3. (생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9조(입장료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<u>감면</u>-----.</p> <p>1. ----- -----,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사람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2.·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다둥이 행복카드에 등재된 가족</u>: 면제</p>
<p>제10조(사용료의 감면) 시장은 제</p>	<p>제10조(사용료의 감면) -----</p>



50 금액

나. ~ 마. (생략)

2. 별표 2 제2호의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. 이 경우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을 적용한다.

가.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(본인을 포함하여 4명까지),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·18민주유공자,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,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: 100분의 50 금액

나. ~ 바. (생략)

3. ~ 5. (생략)

-----

나. ~ 마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  
-----,  
-----  
-----.

가.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다둥이 행복카드에 등재된 가족-----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나. ~ 바. (현행과 같음)

3. ~ 5. (현행과 같음)